

동독전 동베를린에 있어서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베를린주 언론법이 적용된다.

베를린 지방법원 1990. 12. 18 자 판결 -27 O 741/90 사건-

### 적용법조

동서독 통합조약 제 9 조

베를린주 언론법 제 10 조 제 1 항

동독민법 (1975 년) 제 7 조, 제 327 조

### 판결요지

1. 동독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1975 년 동독민법 제 7 조와 관련하여, 동독민법 제 327 조 제 1 항 제 1 호를 근거로 하여 인정된다.
  2. 동독법이 언론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 법은 1990 년 10 월 3 일부터 실효되었다.
- 위 시점 이후부터는 베를린 지역에 대하여는 오로지 베를린 주 언론법만이 적용되는 것이다.

### 사실개요

피신청인은 「S」 잡지의 발행인이다.

피신청인은 1990 년 8 월호의 잡지에서 『포르노, 여자 그리고 정사』라는 제목과, 그리고 『X 경호원이 폭로하다』라는 소제목 하에서 한 장의 사진을 공표하였는 바, 위 사진에는 이 사건 여성인 신청인의 얼굴이 반쯤 옆모습으로 나타나 있었으며, 그리고 위 사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다.

「주치의인 여자의사 B 가 위 X 의 애인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정정보도의 청구를 하였다. 구두변론과정에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신청인과 동독정치인인 X 와의 허구적인 관계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인용한 언론보도들은 이러한 신문들이 동독에 있어서는 신청인에게 구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들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아직까지 한번도 신청인의 성명이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위 원문기사가 최초로 보도될 당시 동독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던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동독 지역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에 해당되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를린 지방법원은 신청인이 청구한 바에 따라서 가처분의 결정을 내렸다.

### 판결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보도한 사실상의 주장에 의하여, 신청인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피신청 인에 대하여 1965.6. 15.자 베를린 언론법(GVBl. S.

744. 베를린 주 언론법. 이는 1988. 3. 14.자의 법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다.)

제 10 조 제 1 항에 의하여, 그가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신청인은 베를린 언론법상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90년 9월 28자 베를린주 언론법의 통합에 관한 법률 제 1 조에 따라서 위 언론법은 1950년 10월 3일부터 전체 베를린 주에 대하여 유효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법규범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판결선고의 시점이다. 그리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률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Zöller, ZPO, 14. Aufl. § 300, Rd.-Nr.3; Baumbach / Hartmann, ZPO, 47 Aufl. § 300 Anm. 3B).

1990. 10. 3. 이전에 동독의 법률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정정보도의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동독에 있어서 언론법의 통과라고 하는 당초의 목적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적어도 1990. 8. 23. 당시 이 사건 기사의 원문보도가 공표될 당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정정보도의 청구권이라는 것은 1975년 동독 민법(GBI, DDRI, 465) 제 7 조와 관련하여 위 민법 제 327 조 제 1 항 제 1 호를 근거로 하여 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위 규정들에 의하면 그의 명예나 명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와 같은 불법상태의 제거 특히 부정확한 주장의 철회 및 그의 공적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1990. 2. 5.자 의사표현, 정보 및 언론의 자유의 보장에 관한 인민위원회의 결의(GBI, DDR I, 39) 제 4 호에 의하면 동독의 모든 시민은 언론기관을 통하여 진실되고, 다양하고 그리고 조화있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위 결의에 의하면,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이 게재된 언론매체와 동일한 언론매체에, 그 정정보도를 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민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의의 법률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이에 대하여는 1968. 4. 8 자 동독 헌법 제 49 조 참조), 위 결의가 적어도 동독민법의 위와 상응하는 조문의 해석에 관하여 기속력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독민법 제 372 조 제 1 항 제 1 호가 명문으로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철회권 속에는 정정보도의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동독의 위 법률이 언론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위 법률은 1990. 10. 3. 이래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1990. 9.28.자 베를린 주 법의 통일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면 베를린 주 법으로서 계속적으로 유효한 위 동독의 법률은, 위 법률 또는 1990. 8.31.자 동독과 서독간의 독일통일의 달성을 위한 조약(통일조약)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실효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언론에 대한 청구권은 독일기본법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주법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기본법 제 75 조제 2 호에 의하면 언론의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연방은 오로지 그 대강만을 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조약 제 9 조에 의하면, 독일기본법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서 주법으로 되게 되어 있는 동독의 법률은 역시 주법으로서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를린 주 법의 통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 조나, 또는 통일조약의 어느 것도 동독법상의 언론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다. 위와 같은 점으로부터 보면, 1990. 10. 3. 이후에는 오로지 1965. 7. 15.자의 베를린 언론법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인의 견해와는 반대로, 그 동안 경과된 시간적인 간격은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첫째로, 이와 같은 관계에서 보면 1990. 10. 3. 이전에는 동독의 법률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권 주장의 시사성에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특정한 요건도 규정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위 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원문기사는 1990. 8. 23.에 공표되었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0. 8. 31.자의 서신에 의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시간적인 경과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요건들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다. 왜냐하면, 정정보도문이 상대방이 도달된 이후의 시간에 대하여는 베를린 주 언론법 제 10 조 제 2 항의 「지체없이」라는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범위 내에서는 권리의 남용이라는 제한만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명백히 권리의 남용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신청인의 대리인이 1990.9. 24.자의 서면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0. 10. 15.까지에는 정정보도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서면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법률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한 언론법상의 소송절차를 개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는 역시 허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Löffler, Presse R, 3. Aufl. [1983], § 11 LPG Berlin, Rd-Nr. 152 참조).